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6 - - - -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1. 20

다. 상 정 일 자 : 제153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07.12.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장영석 문화공보과장)

가. 제안이유

기존의 현수막위주 게시광고 방식을 과학발전에 걸맞는 전자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급증하는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고 광고문화의 선진화에 기여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전자게시대(판)」을 신설 (안 제10조 제1항)
- 전자게시대(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 위탁관리규정 신설 (안 제27조2)
- 2005년 본 조례 개정시 잘못 표기된 용어 정정 (안 제20조 제1항 2호)

3.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은 현수막 등을 이용한 게시광고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과학발전과 광고문화의 발전으로 전자광고방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본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광고환경을 고려하여 전자계시대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 전자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를 시킬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음
- 이밖에, 2005. 12. 15 본 조례 전부개정시 잘못 표기된 제2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1항제2호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을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